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의 안
번호

3238

문성호 의원 (국민의힘, 서대문2)

-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최윤희·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한의 인권조치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가감 없이 표현해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상 방역 통제를 빌미로 북한에서의 인권은 더욱 박탈당했으며, 봉쇄구역 진입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무도한 수준이며,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외부정보 차단 을 위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며, 체포한 탈북민의 강제 복송 과정에서 공포심을 심고자 여성과 아동에게 성폭행 및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 보고

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습니다.

-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습니다.
- 이에 따라 매년 매년 2월 17일의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